



서호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 목 적

이 지침은 본 원의 입소어르신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입소어르신들의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본 원에 입소한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본 원의 모든 종사자는 입소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시설생활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 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

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

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동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유형과 원인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규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2015.1)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유형별 대표적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적학대(Physical Abuse)

● 지표 1 : 노인을 폭행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노인을 폭행한다.	☒ 주먹으로 친다. ☒ 뺨(따귀)을 툭툭 치거나 때린다. ☒ 꼬집는다. ☒ 핍대한다. ☒ 머리를 쥐어박는다. ☒ 발로 찬다. ☒ 멍이 들 정도로 탁탁 친다. ☒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친다. ☒ 머리채를 움켜잡거나 잡아당긴다. ☒ 머리,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아 흔든다. ☒ 팔 또는 발을 비튼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을 폭행한다.	☒ 막대기, 끈, 빗자루 등으로 구타한다. ☒ 신문, 서류철 등으로 친다. ☒ 베개 등으로 친다. ☒ 이불 등을 덮은 후 때린다. ☒ 물건을 던져 노인이 맞는다. ☒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한다. ☒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노인을 누르거나 억압한다.	☒ 먹살을 추켜잡는다. ☒ 목을 조르거나 누른다. ☒ 몸을 제압하거나 누른다. ☒ 발로 몸을 밟아 누른다. ☒ 입을 막거나 입술을 꺾 잡는다. ☒ 몸을 벽이나 구석으로 밀어붙인다.
노인의 몸을 함부로 다룬다.	☒ 몸의 일부를 잡고서 끌고 다닌다. ☒ 사지를 붙잡고 이동시킨다. ☒ 손이나 발로 툭툭치며 다룬다. ☒ 짐짝처럼 마구 다룬다. ☒ 손 대신 발로 노인을 다룬다.

● 지표2 :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억제대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한다.	☒ 생명 유지 또는 치료 목적 외에 억제대(벨트, 조끼, 장갑 등)를 사용한다. ☒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와 사후 정황보고 또는 본인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한다. ☒ 전신 억제대를 사용한다. ☒ 장시간 억제대를 사용한다.
억제대 외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의 몸을 묶거나 구속한다.	☒ 억제대가 아닌 도구(끈, 천, 수갑, 테이프 등)로 몸 또는 몸의 일부를 구속한다. ☒ 억제대가 아닌 도구로 침대, 기둥 등에 묶는다. ☒ 침대 난간 높이를 높게 하거나 철책을 설치하여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을 감금하거나 격리한다.	☒ 방 또는 격리실 등에 자물쇠, 끈, 막대기 등을 설치하여 못나오게 한다. ☒ 방 또는 일부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위협적으로 막는다. ☒ 벽만 응시하여 보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시설 밖으로 못나가게 감금하거나 감시하며 막는다.

● 지표 3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위험한 도구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칼이나 가위, 주사기 등을 들이대어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물건(의자, 양동이, 화분, 유리컵 등)을 던져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벽을 치거나 거울을 깨는 등의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주변에 있는 집기나 물품(예: 의자, 침대, 침구 등)을 발로 걷어차며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지표 4 :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단절한다.	☒ 탈수상태에 빠질 정도로 물을 주지 않거나 단절한다. ☒ 영양실조에 빠질 만큼 최소량의 음식도 주지 않거나 단절한다.
노인에게 강제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의료처치를 하여 생명을 저해한다.	☒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을 강제로 먹인다. ☒ 강제로 주사를 놓는다. ☒ 강제로 불필요한 의료처치를 한다.
노인의 치료 및 생존에 필요한 약물 및 주사를 단절한다.	☒ 의사가 처방한 약이나 주사제 또는 생존에 필요한 약물 및 주사를 단절하여 치료를 방해한다.
노인의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단절한다.	☒ 냉, 난방을 단절한다. ☒ 수도, 전기, 가스를 단절한다.

● 지표 5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은 일(노동)을 강요한다.	☒ 노인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치 않음에도 농지 경작 또는 임야 정리 등의 일을 시킨다. ☒ 노인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치 않음에도 시설 청소, 조리, 설거지 등의 일을 시킨다. ☒ 노인에게 사택 또는 시설장 집의 일을 시킨다. ☒ 강제로 다른 노인을 돌보게 한다(식사수발, 기저귀 교체, 목욕 등).
노인을 감금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 시설 또는 다른 공간에 가두고 일을 시킨다. ☒ 노예처럼 일을 시킨다.

2)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 지표 1 : 노인을 무시하거나 기피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 ☒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 ☒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다(물이나 약을 달라,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 밥을 더 달라 등).
노인을 기피한다.	☒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한다. ☒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피한다. ☒ 자신의 손이 노인에게 닿는 것을 피한다.

● 지표 2 : 노인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 종교활동, 취미여가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사회활동, 종교활동, 취미여가활동을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강요한다. ☒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 종교적 물건(염주, 십자가, 묵주 등)의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강요한다. ☒ 전화, 컴퓨터, 신문, 개인우편물·구독물·인쇄물 수취를 제한하거나 단절한다. ☒ 투표 참여를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이 가족이나 친구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가족이나 친구의 면회나 방문을 방해한다. ☒ 가족이나 친구와의 전화 통화를 방해한다. ☒ 외출과 외박을 막는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을 집단으로 따돌린다.	☒ 다른 노인들과 공모하여 따돌린다. ☒ 직원, 자원봉사자, 실습생들 간에 공모하여 따돌린다.

● 지표 3 :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비난하거나 험담한다. ☒ 창피를 준다. ☒ 꾸짖거나 야단친다. ☒ 구박하거나 괘시한다. ☒ 비웃거나 조롱한다. ☒ 누명을 씌운다.
노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반말을 한다. ☒ 존칭어로 부르지 않거나 별명을 부른다. ☒ 아기에게 하는 말투로 구슬린다(00하면 사탕 줄게, 아 착하지 등). ☒ 아이를 나무라듯이 말한다. ☒ 노인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생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 지표 4 :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에게 폭언을 한다.	☒ 고향(큰 소리)을 지른다. ☒ 욕설이나 상스러운 말을 한다. ☒ 욕박지른다(예: 혼나볼래! 쫓겨나봐야 알겠어! 등)
노인에게 두려움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때리는 시늉을 한다. ☒ 샷대질을 한다. ☒ 주먹을 들이대며 위협한다. ☒ 인상을 쓰며 말한다. ☒ 끔찍하거나 혐오스러운 상황을 보게 한다.

● 지표 5 : 노인의 사생활과 입·퇴소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확일적인 서비스를 강요한다.	☒ 일률적인 헤어스타일을 강요한다. ☒ 확일적인 옷차림 강요한다. ☒ 시설에서 제시한 일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확일적인 서비스를 강요한다.	☒ 일률적인 헤어스타일을 강요한다. ☒ 확일적인 옷차림 강요한다. ☒ 시설에서 제시한 일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한다.
노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다. ☒ 개인 정보 및 의료기록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활용한다. ☒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막는다.
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 입·퇴소 또는 전원 결정시 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다. ☒ 의논 없이 임의로 방을 바꾼다.

3) 성적학대(Sexual Abuse)

● 지표 1 : 노인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에게 성추행을 한다.	☒ 노인에게 입맞춤, 포옹, 애무 등을 한다. ☒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진다(더듬거린다, 쓰다듬다. 톡톡친다, 꼬집는다, 비튼다, 움켜잡는다 등). ☒ 노인에게 자신의 성적 부위 등을 만지게 하거나 애무를 요구한다.
노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갖는다.	☒ 노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요한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을 성폭행한다. ☒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인 노인을 이용하여 성폭행한다.

● 지표 2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다.	☒ 음란하고 상스러운 성적 농담을 던진다. ☒ 신체를 빗대어 성희롱을 한다.(예: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소문을 유포한다. ☒ 목욕, 기저귀교체 등에 대해 동성자의 케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하지 않는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에게 음란물이나 타인의 음란행위를 보게 한다.	☒ 거실 등의 공용 공간 등에서 음란영상을 보게 한다. ☒ 음란한 사진,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준다. ☒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지는 행위를 보게 한다. ☒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기저귀 찬 모습을 촬영한다. ☒ 알몸이나 성적 부위를 촬영한다. ☒ 촬영된 성적 신체 부위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한다.
노인을 벗겨놓은 상태로 둔다.	☒ 옷을 입히지 않고 그대로 둔다. ☒ 알몸 또는 성적부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로 둔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노인의 신체 및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한다(예:가림막 미설치 및 가림막 미사용) ☒ 알몸 또는 신체 일부를 벗겨놓고 목욕대기를 하게 한다. ☒ 신체와 성적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목욕을 시킨다. ☒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을 갈아입힌다.

4)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Exploitation)

- 지표 1 :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현금, 물건, 부동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물건이나 소지품을 가로채서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한다. ☒ 노인의 동의 없이 노인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 연금(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수당(장애수당, 생계급여 등), 임대료, 주식, 보험금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이 받은 선물, 돈, 음식물 등을 가로챈다. ☒ 노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부동산을 임의로 사용한다. ☒ 퇴소 시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에게 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한다.	☒ 퇴소 시 부당한 추가비용을 요구한다. ☒ 서비스 이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 일자리, 부업 등에 참여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급한다. ☒ 시설 내 대체인력으로 활용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지표 2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재산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 금융 서류,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등에 서명을 날조한다. ☒ 동의 없이 부동산 또는 고가의 동산의 명의를 변경한다.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도용).	☒ 동의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사채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 동의 없이 노인의 은행 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동의 없이 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을 계약한다.

● 지표 3 : 노인의 재산 사용이나 그 결정을 통제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현금, 공양, 후원금, 기부금 등을 강요한다. ☒ 노인이 희망하는 현금을 비롯한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한다.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이나 소지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노인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소유하려고 한다.	☒ 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금융 서류,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등에 서명을 강요한다..

5) 방임(Neglect)

● 지표 1 :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 및 서비스를 방치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식사 및 수분공급을 방치한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의 돌봄을 소홀히 한다. ☒ 스스로 수분 섭취가 어려운 노인의 돌봄을 소홀히 한다. ☒ 질환에 따른 식사(예:당뇨식, 저염식, 유동식 등)를 먹이지 않는다. ☒ 대소변을 자주 본다고 물과 음식을 적게 먹인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에게 부적절한 돌봄을 제공한다.	☒ 옷을 과격하게 입히거나 벗긴다. ☒ 빨리 식사를 마치도록 재촉한다. ☒ 강제로 빠르게 먹인다. ☒ 음식을 다 먹지 못했는데도 식판을 치운다. ☒ 기저귀, 옷, 약 등의 물건을 던져준다.
노인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화장실 이용을 제한시킨다. ☒ 화장실에서 배변처리를 해주지 않은 채 장시간 내버려둔다. ☒ 기저귀에 용변을 본 상태로 장시간 내버려둔다. ☒ 스스로 세면, 양치질, 머리감기, 닦물, 목욕 등이 어려운 노인을 불결한 상태로 내버려둔다. ☒ 의복이나 침구를 불결한 상태로 내버려둔다.
노인의 체위변경 및 이동을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욕창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체위변경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 ☒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걷기 등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내버려둔다.

● 지표 2 :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에게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한다.	☒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인다. ☒ 상하거나 부패한 음식을 먹인다. ☒ 먹다 남은 음식을 먹인다. ☒ 음식점에서 버린 음식을 먹인다. ☒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인다.
노인을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한다.	☒ 냉,난방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 침실이 아닌 곳에서 자게 한다(예: 창고, 복도, 욕실). ☒ 감염, 전염 등의 위험이 있는 환경에 방치한다. ☒ 안전사고(화상, 낙상, 감전, 충돌, 질식, 중독 등)의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방치한다.
노인에게 기본 물품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다.	☒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물건(의복, 침구, 위생용품) 및 비품(개인사물함, 보장구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시설에서 비위생적인 물건 및 비품을 제공한다.

● 지표 3 :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질환 및 의료조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당뇨, 혈압 등 질환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 ☒ 질환 치료와 관련된 약 복용을 소홀히 한다. ☒ 욕창 발생 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 ☒ 삽입된 기관 및 소변줄, 장루 등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 ☒ 보호자가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 대한 의료조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응급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 병원 진료가 필요함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내버려둔다. ☒ 병원 진료를 막는다(예: 공실,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 지표 4 : 자기방임 노인을 방치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돌봄 및 의료처치 등의 거부가 노인의 생명에 위협됨을 알면서도 방치한다.	☒ 식사 거부 등의 행위로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노인을 방치한다. ☒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을 거부하여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노인을 방치한다. ☒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돌봄을 거부하는 노인을 방치한다.
자살을 계획하거나 시도하는 노인을 방치한다.	☒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지표 5 : 학대사례를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학대로 의심되거나 학대당하는 노인을 보고도 은폐하거나 방치한다.	☒ 노인이 동료 노인에게 폭행 또는 괴롭힘을 당하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동료 직원 또는 실습생 등 돌봄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다.
학대를 신고하려는 자를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 자를 저지한다. ☒ 노인학대 사실을 가족 또는 외부인에게 알리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협박한다.

6) 유기(Abandonment)

● 지표 :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유기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내다버린다.	☒ 시설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 길거리에 내다버린다. ☒ 소풍, 쇼핑 등 외부활동 후에 노인을 놔두고 온다. ☒ 길을 잃거나 실종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을 찾지 않는다. ☒ 노인을 타시설로 보낸 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②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헐뜯,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⑪ 운영위원회에 보호자 대표를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 2)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